

본회 임원 선거 규정

본회 제14대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05년 1월27일 제15대 임원선거가 실시된다. 본회 회원 자격을 2년 연속 유지하고 사슴농장을 10년 이상 운영한 회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다면 누구나 후보출마 자격이 부여된다. 본회 임원 선거 규정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출할 임원] 본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6인, 감사 2인.

제 3조[임원의 자격 제한] ① 본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령 및 본회 정관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선출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사슴농장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원
 2.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2년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
- ② 임원으로서 ①항의 결격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는 해당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제 4조[선거인] ① 임원선거는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 ② 총회구성원이 아닌 회장 후보자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5조[선거관리] ① 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임원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의 선임은 선거직전 이사회에서 인선한다.
③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사무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조[선거공고] ① 임원선거는 선거 14일전(발신일 기준) 서면우편으로 한다.

- ② 선거공고시 일시, 장소, 선거인수, 선출할 임원, 임원자격조건, 후보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를 표시 해야 한다.

제 7조[후보등록] 임원 직위별 후보등록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 후보자는 총 대의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으로부터 받은 회장후보추천서와 후보등록신청서 및 소견서, 기탁금 3백만원을 선거 7일전까지 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장후보추천서는 1대의원 1인추천에 한하며, 추천 대의원수는 정하는 수에 부족 또는 초

과할 수 없다. 총 대의원수의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기탁금은 본 회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2. 부회장 후보는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 후보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이사후보는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추천한 이사후보 명단을 선거관리 위원장에 제출한다.
4. 감사후보는 선거전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장에 감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제 8조[회장후보고지] 회장후보 등록 마감 즉시 인적사항과 소견사항을 대의원에 고지한다.

제 9조[득표활동] 등록을 필한 회장 후보자는 선거전일까지 득표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득표활동의 제한] ① 다음의 방법으로 득표활동은 할 수 없다.

1. 허위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행위
2. 금전으로 대의원을 매수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에 고지한 소견서 외 유인물 및 출판물에 의한 득표활동

제11조[등록무효] 제10조와 관련하여 대의원 3분지 2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12조[회장선거] 회장선거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소견발표 : 회장 후보자는 협회운영과 양록발전에 관한 소견을 기호(가, 나, 다) 순으로 발표해 되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
2. 투 표 : 선거관리 간사의 대의원 호명순으로 비밀이 보장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3. 개 표 : 후보자 추천 참관인 입회하에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계표한다.
4. 당선발표 : 임원선거 관리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발표하고 다수득표자 를 회장 당선자로 선언한다.

제13조[부회장, 이사선거] ① 부회장, 이사의 선거는 다음에 의한다.

1. 부회장 : 당선된 회장은 부회장 정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이 사 : 회장, 부회장이 협의추천한 이사 후보를 총회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② 총회는 추천된 후보의 일괄 또는 후보별 동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선거] 등록한 감사후보는 무기명 비밀 투표 또는 기립표결로 선출하며 득표 순 정원을 당선 인으로 한다.

제15조[구비서류제출] 선출된 임원은 취임동의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공증용) 등을 선출 후 10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시행] 본 규정은 2002년 10월 4일 개정 시행한다..